특어취득따라깝기 아는 것이 베이의 함 특허심사부터 효력방생까지 ※ 본지 116호와 이어집니다.

V. 특허권의 발생

1 심사관에 의한 실체심사

- 1) 심사관은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서의 각각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 하여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/진보성 등을 심사하여 특허결정서나 거절결정서를 출원인 에게 통지합니다.
- 2)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이유통지(최초거절이유통지 또는 최후거절이유통지) 를 하고, 일정한 기간(예컨대, 2개월)을 정하여 의견서 및/또는 보정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.
- 3) 특허/실용신안 출원은 심사청구 후 평균 10개월에 1차 심사처리가 이루어집니다.
- 4) 상표/디자인은 출원 후 평균 6개월에 1차 심사처리가 이루어집니다.

2 특허결정과 거절결정

- 1) 심사관은 심사결과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결정을 합니다.
- 2)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합니다.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.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(심사전치).

3. 특허권의 발생과 연차등록료

- 1) 특허권은 특허료(설정등록료)를 납부하여 설정 등록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.
- 2) 납부기간은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(1년분부터 3년분)의 특허료 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, 이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6월이내(추가납부기간)에 한하여 2배 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 이 추가납부기간도 경과하면 출위포기로 간주되어 특허등록을 받 을 수 없습니다.
- 3) 개인,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50% 또는 70%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4)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등록료(4년분 이후부터)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.
- 5) 청구항 수가 너무 많아 특허료/연차등록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, 출원인/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는 때 청구항 별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.

	관리	설정등록 (1~3년분)	연차등록료				
	,		4~6년	7~9년	10~12년	13~15년	16~25년
특허	기본료	★매년 22,000원씩 66,000원	매년 51,000원	매년 114,000원	매년 240,000원	매년 360,000원	
		★매년 27,000원씩 81,000원	매년 60,000원	매년 120,000원	240,000원		
	가산료 (청구범위의 1항마다)	★매년 15,000원씩 45,000원	매년 23,000원	매년 38,000원	매년 55,000원	매년 55,000원	
		★매년 18,000원씩 54,000원	매년 25,000원	매년 40,000원	55,000원		



윤재석 변리사는 한국과학기술원(KAIST) 전기/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라임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. 주요 업무 범위는 반도체/ System LSI회로, 통신/인터넷/보안관련기술, BM, 게임, 반도체 장비, 바이오 및 화학 등이다.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, 현재 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전문가 POOL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.









4. 특허권의 효력

- 1)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. 특허권을 존속 시키기 위해서는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 (maintence fee)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합니다.
- 2) 특허권자는 업(業)으로서 그 특허발명의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.

물건의 발명	그 물건을 생산 • 사용 • 양도 •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/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)을 하는 행위
방법의 발명	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	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 한 물건을 사용 • 양도 •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 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

- 3) 특허권이 공유(共有)인 경우
- 가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면 그 지분의 양도,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, 전용 실시권, 또는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.

나. 그러나,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5. 특허발명의 보호범위

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 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
예컨대. [청구항 1]에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(예컨대. A. B. 및 C)을 갖는 특허발명이 기재된 경우. 실시 품이 여러 구성요소들(예컨대, A, B, 및 C) 중에서 어느 하나(예컨대, A, B, 또는 C)의 구성요소 또는 두 개의 구성요소들(예컨대, A+B, B+C, 또는 A+C) 만을 포함하는 경우 실시품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. 이를 전요소주의(ALL ELEMENT RULE)라 합니다.

1) 전요소주의에 의하여 특허권의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

구분	특허발명	실시품	침해여부
문언 침해	A + B + C C	A + B + C C	침해
균등 침해	A + B + C C	A + B + C 지환	침해로 인정 (단, 실직적인 치환 • 대체일 경 우는 비침해
이용 침해1	A + B + C C	A + B + C + D	침해
이용 침해2	A + + C C	A H B C N D	침해로 인정

2) 전요소주의에 의하여 특허권의 비침해로 판단되 는 경우

생략 실시		비칠해
불완전 이용 침해	A A B B B B D D D D D D D D D D D D D D	(단, C요소의 비중에 따라서는 침해로 판단가능)
선택 침해	A	침해
우회 설계	A A B B1 + + C C C	B101 B에 대한 실질적인 치환· 대체 구성요소이면 비침해